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21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5. 15. 접수 제172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D은 원고에게 ARS를 통하여 E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3.

대출금 1,800만 원, 6개월 거치 30회 상환(만기일 2019. 3. 28.), 이자율 연 13.9%, 연체이자율 연 16.9%로 하는 대출계약(대출종류: E,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18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다. D은 2018. 5. 15.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당시 D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2,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5. 15. 접수 제172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7. 26. 이 사건 대출계약은 연체처리되었고, D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였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역시 같은 날 연체처리 되었다.

마. D은 그 무렵 F카드와 G카드에 대한 금융채무 또한 연체하여 H기관에 2018. 10. 19. F카드와 관련하여 약 18,888,000원의 금융채무가, 2019. 3. 6. G카드와 관련하여 약 23,445,000원의 금융채무가 각 연체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그 변제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보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에 대하여 총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2,8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자인 D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의사

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를 2,800만 원이라고 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자신의 삼촌인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와 같이 D의 자필로 된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 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8. 5. 16.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6.부터 2023. 5. 16.까지(5년)로 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D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2018년까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게 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D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5. 15. 접수 제172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별지